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CP)의 분쟁해결 기능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A Proposal for Enhancing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and the
Governance of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NCP)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안건형*
Keon-Hyung Ahn

〈목 차〉

- I. 서 론
 - II. 한국 NCP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III. 각국 NCP의 운영 관련 OECD 가이드라인 기준 및 해외사례
 - IV. 한국 NCP의 개선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이의제기사건 분쟁
해결, NCP 자문기구

*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前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NCP 사무국 팀장

I. 서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의 부속서로 1976년에 제정되었고, 다국적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RBC’)의 이행 및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문서¹⁾이다.

OECD는 동 가이드라인의 2011년 개정 당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결정 개정사항」²⁾을 통해 OECD 가이드라인의 모든 수락국들에게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의 설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였으며,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 및 촉진을 위하여 OECD 내의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중심으로 47개국의 NCP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³⁾

이와 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제규범들, 예를 들어,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이하 ‘UNGC’),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 이하 ‘GRI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⁴⁾과 달리 자체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 즉 OECD 가이드라인의 규정 위반과 관련되는 구체적 사안들(specific instances)에 대한 이의제기사건 해결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 NCP의 이의제기사건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상당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⁵⁾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NCP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한국 NCP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각국 NCP의 운영 관련 OECD 가이드라인 기준 및 해외사례들을 조사하

1) OECD 가이드라인은 1984년, 1991년, 2000년, 2011년에 개정된바 있고 현재는 2011년 개정 가이드라인이 적용 중에 있으며, 총 11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1. 개념 및 원칙, 2. 일반 정책, 3. 정보의 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 소비자보호, 9. 과학 및 기술, 10. 경쟁, 11. 조세); 안건형(201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 NCP의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제42권 제4호, 160면.

2) 동 결정은 2011. 5. 25.에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내려진 것이다.

3) 안건형(201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 NCP의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제42권 제4호, 160면.

4) 이들 국제규범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건형·조인호·권희환, “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상무연구」제75권, 2017, 207-209면 참조.

5)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2017. 6. 26), “OECD회원국으로서 이제는 정상운영 되어야 할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14-17면. Available from http://www.khis.or.kr/spaceBBS/bbs.as?act=read&bbs=p_file&no=871&ncount=593&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2017. 9. 3. 최종접속).

여 검토하며, IV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한국 NCP의 분쟁해결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한국 NCP의 향후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II. 한국 NCP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관련 규정 및 한국 NCP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되었고 당시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를 NCP로 지정한바 있다.⁶⁾ 2000년 6월 각국별로 OECD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할 NCP를 설치토록 한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 NCP로 한다는 내용을 2000년 12월 OECD에 통보한바 있다.⁷⁾ 그리고 2001년 5월 12일 당시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산업자원부 공고 2001-103호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시행하였다.⁸⁾

그런데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국 NCP 구성·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를 주문함에 따라,⁹⁾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연구용역¹⁰⁾ 결과를 반영하여 위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산업자원부 공고 2014-143호로 공고한바 있다. 이 개정 운영규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는 종래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와 해외투자과가 담당했던 한국 NCP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관하고(제12조), 한국 NCP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담당하며(제4조 제2항), 민간위원들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제4조 제2항 1호),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이 맡는다는 것이었다(제4조 제3항).

6) 왕윤중(1996),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3-234; 노한균(201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운영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73면에서 재인용.

7) 산업자원부(200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산업자원부. Available from <http://www.motie.go.kr/motie/in/it/oeecd/oeecdguide/oeecdguide.jsp> (2017. 10. 30. 최종접속); 노한균(201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운영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73면에서 재인용.

8) 노한균(201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운영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73면.

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주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i) 노동, 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ii) 시민사회와 협력 및 정보 공유, 가시성,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고하며, 그리고 iii) 이의제기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 처리절차를 구체화 하라는 것이었다.

10) 노한균(201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운영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1-220면.

그리고 2017년 2월에 다시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KOTRA CSR 사업단장은 제외되고 대신에 노동법 전문가인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 교수)와 중재·조정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윤은경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새로이 위촉되었다. 한국 NCP의 현재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한국 NCP 조직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간사) 고용노동부 팀장 환경부 과장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CSR 지속경영 연구기관) 한국표준협회 전무(ISO26000) 이상희 교수(노동법 전문가) 윤은경 교수(중재·조정 전문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재위원회</td> </tr> <tr> <td> 중재위원장: NCP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 위원: NCP 위원 및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td> </tr> </table>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장: NCP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 위원: NCP 위원 및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장: NCP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 위원: NCP 위원 및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NCP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td> </tr> <tr> <td>사무국장: 기획관리본부장</td> </tr> </table>		NCP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기획관리본부장
NCP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장: 기획관리본부장			

출처: 저자가 한국 NCP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

2. 한국 NCP 이의제기사건 현황

OECD 가이드라인 절차지침에서 NCP는 동 가이드라인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평하고 그리고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 사안(specific instances)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¹⁾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NC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가입국이 아니어서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피당사자인 다국적기업의 본국 NCP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¹²⁾ 이의제기사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1) OECD 가이드라인 절차지침 I. 국가연락사무소, C. 구체적 사안에서의 이행 내용 참조.

12) 한국 NCP 홈페이지 <http://www.kcab.or.kr/servlet/kcab_ncp/info/3000> (2017. 9. 1. 최종접속) 참조.

(1) 이의제기 접수

이의제기사건의 처리 절차는 우선 이의제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소는 이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양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만일 사무소가 그 신청 접수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가 불가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

1차 평가는 이의제기 내용, 사건의 피신청인인 다국적기업의 답변 및 관련 당사자들로 부터 제출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해 심사하는 단계이다. 이 정보들을 활용하여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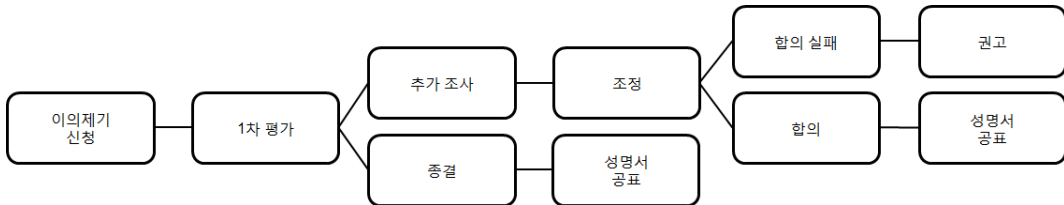
(3) 분쟁해결을 위한 주선(good offices) 제공

사무소는 제기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

제기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권고를 함으로써 절차는 종료된다.¹³⁾

〈표 2〉 NCP 이의제기사건 해결절차도



출처: 한국 NCP 홈페이지

13) 각국의 NCP는 이의제기사건의 처리상황 등을 포함한 활동내용을 매년 OECD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각국의 NCP는 처리한 이의제기 사건들을 OECD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국 NCP도 그동안 OECD에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홈페이지 상에는 한국 NCP가 처리한 사건이 불과 9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그러나 필자가 NCP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OECD 한국대표부 전·현직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집계한 바로는 한국 NCP 처리 이의제기 사건이 2016년 12월 말 현재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OECD 통계자료상의 9건과 비교하면 22건이나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통계는 아니므로 문서로서 현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아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NCP 사무국 업무를 시작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제기사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한국 NCP 처리 이의제기사건 요약표(2013. 9.~2016. 12.)

번호	피신청인(이의제기 시기)	母國	업종	발생국
1	대광화공(주)(‘13.11)	한국	최루가스	바레인
2	대우인터내셔널, 조폐공사등(‘14.12)	한국	면방	우즈베키스탄
3	하이디스(‘15.7.23; 1차평가 통과)*	대만	스마트폰 패널	한국
4	아사히글라스(‘15.8.5; 1차평가 통과)*	일본	PDP글라스	한국

참고: * 하이디스, 아사히글라스 사건(총 2건): 2016. 12. 14. 최종성명서 발표.

출처: 저자가 한국 NCP 홈페이지¹⁵⁾ 참고하여 정리

한국 NCP 사무국 업무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관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관 후 대광화공 사건과 대우인터내셔널 사건까지 단 한 사건도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된 사실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 12월에 접수되고 2015년에 종결되었던 대우인터내셔널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1차 평가 단계에서 종결되었지만, 당사자 간 서면 교환, 당사자와의 개별 면담 등이 진행되며 있고, 당해 기업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쟁점들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처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또한 한국 NCP 사무국은 해당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OECD 가이드라인 및 이의제기사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해 사건의 쟁점과 발생 후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2015년 7월과 8월에 각각 접수되었던 하이디스 사건과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비록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아 우호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모두 1차 평가

14) 더 상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 <[http://mneguidelines.oecd.org/database/searchresults/?hf=20&b=0&q=\(NCP%3A\(Korea%2C+Republic+of+\(South\)\)\)&s=desc\(mne_datereceived\)](http://mneguidelines.oecd.org/database/searchresults/?hf=20&b=0&q=(NCP%3A(Korea%2C+Republic+of+(South)))&s=desc(mne_datereceived))> (2017. 9. 2. 최종접속) 참조.

15) http://www.kcab.or.kr/servert/kcab_ncp/info/4001 (2017. 9. 2. 최종접속).

를 통과한 사실 만큼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선진적인 해외 NCP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의제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NCP 위원회와 사무국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한국 NCP의 기능에 관한 평가

각국의 NCP가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핵심기준은 통상 4가지 기준, 즉,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등에 기초하여 판단한다.¹⁶⁾ 아래에서는 이들 4가지 핵심기준 중 이의제기사건 해결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투명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¹⁷⁾

투명성과 관련하여, 한국 NCP는 이의제기사건의 최종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OECD 투자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투명성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¹⁸⁾ 그러나 NCP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고 있지 않거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투명하게 절차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¹⁹⁾ 특히,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은 이의제기사건 처리가 정부 주도로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한국 NCP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²⁰⁾ 또한 OECD의 이해관계자 중 한 단체인 OECD Watch는 “2014년 구조개편 이후, 한국 NCP는 현재 또한 NCP 위원으로서 참여할 전문가들을 지명하였으나 그러한 지명 절차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의 충분한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비난받고 있다. 지명된 위원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그들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²¹⁾²²⁾ 요컨대, 이는 한국 NCP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로 귀착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외국 NCP의 사례와 한국 NCP의 개선방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6) OECD (201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mmentary o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Section I.9, Paris: OECD Publishing, p.79.

17) 나머지 3가지 기준, 가시성, 접근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안건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 NCP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7, 176-179면 참조.

18) *Ibid.*, 178면.

19) *Ibid.*

20) *Ibid.*,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2017. 6. 26), “OECD 회원국으로서 이제는 정상운영 되어야 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10-12면. Available from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no=871&ncount=593 &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2017. 9. 3. 최종접속).

21) OECD Watch (2015), *Remedy Remains Rare*, The Netherlands: OECD Watch, p. 34.

22) 안건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 NCP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7, 178면

Ⅲ. 각국 NCP의 운영 관련 OECD 가이드라인 기준 및 해외사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NCP의 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4가지 핵심기준은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이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각 NCP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공평하고, 그리고 양립 가능한(*compatible*) 방식으로 이의제기사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이러한 추상적인 평가기준 중에서도 실무적으로는 NCP의 구조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외국 NCP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단일형 기관(*Mono-agency*)으로서 단일 정부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형태, 둘째, 복수형 기관(*Interagency*)으로서 2개 이상의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태, 셋째, 3자형/4자형(*Tripartite/ Quadripartite*) 형태로서 정부부처 대표,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3자형과 NGO 대표가 추가된 4자형 형태, 마지막으로, 독립형 기관(*Independent agency*) 등의 유형으로 일별하고 있다.²⁴⁾ 그리고 단일형 기관은 NCP 사무국 업무를 하나의 정부부처에 위임하면서 복수의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자문을 수행하는 형태인 추가 단일형 기관(*Mono-agency Plus*)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들을 기준으로 전세계 47개국 NCP 구조 유형을 일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NCP 구조 유형에 따른 분류표

번호	구조 유형	내용	해당 NCP
1	단일형 기관 (<i>Mono-agency</i>)	단일 정부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형태	그리스,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터키, 폴란드 등 총 11개국
2	추가 단일형 기관 (<i>Mono-agency Plus</i>)	NCP 사무국 업무를 하나의 정부부처에 위임하면서 복수의 부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자문을 수행하는 형태	루마니아, 미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콜롬비아, 페루, 헝가리, 호주 등 총 12개국
3	복수형 기관 (<i>Interagency</i>)	2개 이상의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태	독일, 모로코, 브라질, 스위스, 슬로베니아, 영국,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한국 등 총 10개국
4	3자형 기관 (<i>Tripartite</i>)	정부부처 대표,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태	라트비아, 벨기에, 스웨덴, 튀니지, 프랑스 등 총 5개국

23) OECD (201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Section I.22 in Commentary o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Paris: OECD Publishing, pp.81-82.

24) OECD (2017), *DAF/INV/NCP(2017)3*, p.5.

번호	구조 유형	내용	해당 NCP
5	4자형 기관 (Quadrupartite)	정부부처 대표,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NGO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태	체코, 핀란드 등 총 2개국
6	독립형 기관 (Independent agency)	제3의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되 해당 정부부처 소속의 사무국이 지원하는 형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 총 4개국

참고: 47개 NCP 중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집트 NCP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

출처: OECD (2016), *Implement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National Contact Points from 2000 to 2015*, Paris: OECD Publishing, pp.68-69.

전 세계 47개국 NCP 중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3개국을 제외한 44개국 NCP의 구조에 대하여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단일형 기관(Mono-agency Plus) 유형의 국가가 12개국(27.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단일형 기관(Mono-agency)이 11개국(25%), 복수형 기관(Interagency) 유형이 10개국(22.7%), 3자형 기관(Tripartite) 유형이 5개국(11.4%), 독립형 기관(Independent agency) 유형이 4개국(9.1%), 그리고 4자형 기관(Quadrupartite) 유형이 2개국(4.5%)로 조사되었다.

한국 NCP는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캐나다 NCP 등과 함께 복수형 기관(Interagency)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NCP 사무국 업무를 국내 유일의 상설 ADR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라 i)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일반사항(제12조 제3항 1호), ii)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중요하지 않은 사항(제12조 제3항 2호), iii) 동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의 조정·중재를 위한 사전 조사(제12조 제3항 3호), 그리고 iv) 산업통상자원부와 OECD에 대한 동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보고(제12조 제3항 4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NCP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44개국 NCP를 관할하는 해당 정부부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본 논문 부록의 <표 5>와 같다.

각국의 NCP를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경제·통상·투자·금융 관련 부처가 전체 47개국 중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3개국을 제외한 44개국 중 31개국(70.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교부가 5개국(11.4%)²⁵⁾, 독립형 기관의 형태가 4개국(9.1%)²⁶⁾

25)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스웨덴, 튀니지 NCP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튀니지의 경우 외교부라는 명칭 대신 국제협력·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외교부로 분류하였다.

26)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덴마크의 경우 덴마크 조정 및 이의제기 처리 기관(The Danish Mediation and Complaints-handling Institution)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보이지만 NCP 사무국은 산업·기업·재정부(Ministry of Industry, Business and Financial Affairs)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NCP 역시 사무국은 외교부에, 리투아니아는 NCP 사무국은 경제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무부가 1개국(2.3%), 그리고 기타로서 고용·노동 분야와 경제·통상·투자 분야가 혼합되어 있는 3개국(6.8%)²⁷⁾ 등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독립형 기관으로 분류한 4개국 역시 모두 NCP 사무국은 정부부처(경제·통상·투자·금융 관련 부처 2개국, 외교부 2개국)에 소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통상·투자·금융 관련 부처가 33개국(75%)에 이르며 이는 전체 NC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외교부가 7개국(15.9%)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경제·통상·투자·금융 관련 부처와 외교부를 합치면 90.9%에 이른다. OECD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다국적기업들이고 해외투자 활동과 현지국에서의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처가 이들 부처들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외교부가 15.9%를 차지하는 이유도 국제통상 및 투자 관련 업무를 국가에 따라서는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의 기능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가 맡아 오다가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NCP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체 OECD NCP 소속 정부부처에 관한 통계 조사결과를 보거나 업무의 성격을 보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한국 NCP의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건대, 현재 한국 NCP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크게 특이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NCP의 담당 부처를 노동부로 변경하자는 의견²⁸⁾도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NCP를 담당하는 부처는 산업·경제부처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이 다루는 분야는 노동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동부는 이미 노동문제에 있어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오래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었다. 노동부가 NCP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노동문제와 관련된 이의제기사건은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절차에 흡수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더구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건대, NCP 이의제기사건의 비사법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한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두는

27) 핀란드 NCP 사무국은 고용경제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Economy), 아일랜드 NCP 사무국은 고용·기업·혁신부(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뉴질랜드 NCP 사무국은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에 두고 있다.

28) 윤효원(2017. 8. 21), “OECD 가이드라인 NCP, 노동부로 이관하자”, 매일노동신문. Available fro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50> (2017. 9. 3. 최종접속).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 등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을 지적하자면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1. 한국 NCP 자문기구 설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한국 NCP 자문기구(advisory body)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NGO 등 시민사회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 대표, 무역협회, 국가인권위원회, UN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국제단체, 학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문기구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스위스 NCP의 경우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정부위원 4명(NCP를 운영하는 경제부 담당 director 1명, 타 부처 3명), 경영자협회(employers' federations) 2명, 노동조합(trade unions) 2명, 무역협회(trade associations) 2명, NGO 2명, 학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

1년에 2회(상·하반기 1회씩) NCP 위원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운영 및 활동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회의의 내용은 회의록 작성을 통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NCP의 위상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강구

나아가 일부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NCP 사무국 위탁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³⁰⁾ 나아가 여러 논거들 중에서 다른 국가의 NCP 사무국은 행정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담당하던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 것은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순환 근무로 인한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고 동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 조정·중재 등 국내 유일의 상설 ADR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여 위탁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OECD에 해당 가이드라인 이행상황과 같은 보고를 위탁하는 점에 대하여도 비판을 하고 있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후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친 후 OECD 투자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29) 스위스 NCP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Section 2, Article 7 Composition and appointment.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130820/index.html> (2017. 9. 3. 최종접속).

30)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2017. 6. 26), “OECD회원국으로서 이제는 정상운영 되어야 할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14-17면. Available from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no=871&ncount=593&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2017. 9. 3. 최종접속).

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의제기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NCP 사무국을 담당하고 난 이후부터 1차 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최초로 보고된바 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기술유출을 이유로 하는 새로운 이의제기사건이 한국 NCP에 접수되었다고 한다.³¹⁾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이의제기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 NCP에도 이의제기를 신청하였는바, 미국 NCP와의 논의를 통하여 한국 NCP가 Leading NCP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 NCP는 Supporting NCP로서 한국 NCP에 협조하기로 협의하는 등 이의제기사건 협력(specific instance coordination)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³²⁾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NCP 이의제기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상사중재원의 NCP 사무국 위탁 폐지 주장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오히려 NCP 사무국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NCP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직순환 인사를 지양하는 방안 모색과 나아가 홍보교육 업무와 NCP 사무국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 내 별도의 사업단 또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V. 결 론

위에서도 지적한대로, 한국 NCP에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한국 NCP의 운영 및 활동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 NCP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 오해를 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NCP 역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존중하며 이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회의의 내용은 회의록 작성을 통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문기구의 역할이 이의제기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문이 아니라 NCP의 일반적인 운영 및 활동 방향에 관한 제언을 청취, 이를 통하여 한국 NCP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구조적으로 마련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양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자문위원들이 속한 단체와 공동행사 개최 등을 계획해 볼 수도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자문기구는 한국 NCP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 박상희(2017. 8. 11), “기업책임경영(RBC) 작업반 논의 동향”, OECD RBC 작업반 회의자료(2017. 6. 27), p.2. Available from <http://oecd.mofa.go.kr/korean/eu/oecd/policy/conference/index.jsp> (2017. 9. 3. 최종접속).

32) *Ibid.*

지난 2017년 3월, OECD 기업책임경영(RBC)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WPRBC'라 한다) 회의를 계기로 한국 NCP는 2019년에 OECD의 동료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평가를 받는 국가의 NCP에 관하여 구조, 현황, 실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동료평가 보고서의 형태로 기록되고 공개된다는 점에서 각국의 NCP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로서도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만일 2019년 NCP 동료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OECD WPRBC의 한국 NCP에 대한 비난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격의 문제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들과 각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건대, 지금은 NCP의 주무부처를 변경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NCP 사무국 위탁을 폐지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를 선택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현재 N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사무국,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2019년의 동료평가를 잘 대비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한국 NCP와 사무국은 시민단체와 NGO들이 주장하고 비판하는 부분 중 상당수는 매우 타당한 주장이므로 이를 잘 경청하여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기업과 경제에 급작스러운 타격이 되지 않는 균형점을 잘 찾아 정책을 수행하고 업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NCP에 있어 자문기구의 설치도 현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노르웨이 NCP, 「2015년 연례보고서」. Available from <http://nettsteder.regjeringen.no/ansvarlignaringsliv-en/files/201401/OECD-kontaktpunkt-2015-ENG-nett.pdf>, 2015.
- 노한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운영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3.
- 박상희, “기업책임경영(RBC) 작업반 논의 동향”, OECD RBC 작업반 회의자료(2017. 6. 27). Available from <http://oecd.mofa.go.kr/korean/eu/oecd/policy/conference/index.jsp>, 2017. 8. 11.
- 안건형,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 NCP의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제42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7.
- _____·조인호·권희환, “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입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상무연구」제7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7.
- 윤효원, “OECD 가이드라인 NCP, 노동부로 이관하자”, 「매일노동신문」. Available from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50>, 2017. 8. 21.
- 왕윤중,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산업자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Available from <http://www.motie.go.kr/motie/in/it/oecd/oecdguide/oecdguide.jsp>, 2011.
- 한국 NCP 개혁을 위한 모임, “OECD 회원국으로서 이제는 정상운영 되어야 할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Available from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no=871&ncount=593&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2017. 6. 26.
- OECD, *Annual Report o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6*, Paris: OECD Publishing, 2017.
- OECD, “*DAF/INV/NCP(2017)3*”, Paris: OECD Publishing, 2017.
- OECD, “*DAF/INV/RBC(2015)1*”, Paris: OECD Publishing, 2015.
-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mmentary o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Paris: OECD Publishing, 2011.
- OECD Watch, “Remedy Remains Rare”, The Netherlands: OECD Watch, 2015.
- 스위스 NCP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Available from <https://www.admin.ch/opc/>

en/classified-compilation/20130820/index.html.

독일정부 홈페이지. Available from https://www.g7germany.de/Content/EN/_Anlagen/G7/2015-06-08-g7-abschluss-eng_en.pdf?__blob=publicationFile&v=3.

한국 NCP 홈페이지. Available from http://www.kcab.or.kr/servlet/kcab_ncp/info/100.

OECD 홈페이지. Available from [http://mneguidelines.oecd.org/database/searchresults/?hf=20&b=0&q=\(NCP%3A\(Korea%2C+Republic+of+\(South\)\)\)&s=desc\(mne_datereceived\)](http://mneguidelines.oecd.org/database/searchresults/?hf=20&b=0&q=(NCP%3A(Korea%2C+Republic+of+(South)))&s=desc(mne_datereceived)).

ABSTRACT

A Proposal for Enhancing Dispute Resolution Functions and the Governance of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NCP)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eon-Hyung Ahn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was initially promulgated in 1976 as a form of annex to 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aims at accomplishing the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e latest version of The Guidelines, as revised in 2011, directed 47 adhering countries to The Guidelines to set up their respective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NCPs are The Guidelines'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specific instances arising from breach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The Guidelines. Korea to date has its own NCP performing its role to offer good offices and facilitates settl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specific instances regarding The Guidelines. However, there has been strong criticism from NGOs and civil society that Korea NCP has not performed well due to lack of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governance of Korea NCP.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i) examine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NCP, ii) evaluates the core criteria for function and governance of NCPs through a comparative overseas cases study, and iii)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Korea NCP.

Key Words : OECD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NCP), Dispute Resolution of Specific Instances, NCP Advisory Body

[부 록]

〈표 5〉 각국 NCP 관할 정부부처 분류표

NCP	소속 부서 (Location)	구조 유형
그리스	개발·경쟁력·기반시설·통신부 (Ministry of Development, Competitiveness, Infrastructure and Networks -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단일형 기관 (Mono-agency)
네덜란드	4명의 독립적인 위원 + 사무국 + 자문기구(사회고용부, 경제부, 외교부, 인프라 및 환경부) * 사무국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 위치	독립기관 (Independent agency)
노르웨이	4명의 독립적인 위원 + 사무국(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독립기관 (Independent agency)
뉴질랜드	사업·혁신·고용부 - 통상·국제환경과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Trade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Branch)	단일형 기관 (Mono-agency)
덴마크	덴마크 조정 및 이의제기 처리 기관 (The Danish Mediation and Complaints-handling Institution) 사무국은 산업·기업·재정부(Ministry of Industry, Business and Financial Affairs)에 위치	독립기관 (Independent agency)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라트비아	외교부 - 경제관계 및 개발협력정책 부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Economic Relatio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Department)	3자형 기관 (Tripartite)
루마니아	해외투자·민관 협력 부서 (Department for Foreign Investment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룩셈부르크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단일형 기관 (Mono-agency)
리투아니아	경제부 투자 및 수출부서(사무국)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Investment and Export Department) + 독립 전문가들 +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독립기관 (Independent agency)
멕시코	경제부 - 해외투자국 (Ministry of Economy - Directorate General for foreign Investment)	단일형 기관 (Mono-agency)

NCP	소속 부서 (Location)	구조 유형
모로코	투자개발 부서 (Agency for Investment Development)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미국	국무부 - 경제사업국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벨기에	연방 경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에너지부 (Federal Public Service Economy, S.M.E's, Self-Employed and Energy)	3자형 기관 (Tripartite)
브라질	금융부 - 국제부서 (Ministry of Fiance-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스웨덴	외교부 - 국제통상정책 부서 (Ministry of Foreign Affairs-international Trade Policy Department)	3자형 기관 (Tripartite)
스위스	경제사무국 - 국제투자·다국적기업단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Unit)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스페인	경제·경쟁력부 - 국제통상사무국 (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 - Secretariat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슬로바키아	투자·통상개발 부서 (Investment and Trade Development Agency)	단일형 기관 (Mono-agency)
슬로베니아	경제개발·기술부 - 관광·국제화국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y - Directorate for Tourism and internationalization)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아르헨티나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orship)	단일형 기관 (Mono-agency)
아이슬란드	산업·혁신부 (Ministry of Industries and Innovation)	단일형 기관 (Mono-agency)
아일랜드	고용·기업·혁신 부서 (Department of Jobs, Enterprise and Innovation)	단일형 기관 (Mono-agency)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 기업집행 부서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 Executive Office of Enterprise Division)	단일형 기관 (Mono-agency)
영국	사업·기술·혁신 부서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오스트리아	연방 과학, 연구, 경제부 (Federal Ministry of Science, Research and Economy)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NCP	소속 부서 (Location)	구조 유형
이태리	경제개발부 - 산업정책·경쟁역량국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General Directorate for Industrial Policy and Competitiveness)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일본	외무성 - 경제국; 통상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Economic Bureau;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체코공화국	통상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4자형 기관 (Quadripartite)
칠레	외교부 - 국제경제관계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General 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캐나다	국제부 - 국제무역부서 (Department of Global Affairs Canada - International Trade Portfolio Division)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코스타리카	해외통상부 - 투자부서 (Investmen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단일형 기관 (Mono-agency)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Tourism)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터키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단일형 기관 (Mono-agency)
튀니지	국제협력·개발부 (Ministry of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3자형 기관 (Tripartite)
페루	투자·홍보 부서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포르투갈	경제부 - 경제국; 외교부-투자 부서 (Ministry of Economy -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ctivit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Investment Agency)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폴란드	정보·해외투자 부서 - 경제·정보 부서 (Information and Foreign Investment Agency - Economic Informational Department)	단일형 기관 (Mono-agency)
프랑스	경제·재정부 - 재무국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Directorate General of the Treasury)	3자형 기관 (Tripartite)
핀란드	고용·경제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원회 (Ministry of Employment and Economy - Committe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자형 기관 (Quadripartite)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복수형 기관 (Interagency)

NCP	소속 부서 (Location)	구조 유형
헝가리	국가경제부 - 국제금융부서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Finance)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호주	재무부 - 외국인투자·통상정책 부서 (Treasury-Foreign Investment and Trade Policy Division)	추가 단일형 기관 (Mono-agency Plus)

참고: 47개 NCP 중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집트 NCP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

출처: OECD (2016), *Implement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National Contact Points from 2000 to 2015*, Paris: OECD Publishing, pp.69-71.